

『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법 개정(2008. 12. 31)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

-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

○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(안 제11조제1항)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 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

○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안 제11조제2항)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

○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-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 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

4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지방공무원법 개정(2008년 12월)에 따라 외국인에게 특수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지방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, 일반직에 준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인사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
-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
-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